

제302회 임시회
행정자치위원회

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김혜련 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혜련
(더불어민주당, 기획경제위원회)

□ 행정자치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김혜련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,

25명의 동료의원들께서 함께 발의해주신

「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
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동 개정안 제4조제2항에서는 “청소년은 인종·종교·성별·
나이·학력·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
아니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어,

여기에 ‘국적’을 추가하여 서울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
있는 외국 국적 청소년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는
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
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

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